

KBA 3x3 KOREA TOUR 2023시즌 인터넷 중계 과업지시서

1. 과업명

KBA 3x3 KOREA TOUR 2023시즌 인터넷 중계(유튜브, 네이버)

2. 목 적

- 가. 대회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농구의 저변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함
- 나. 인터넷 중계방송으로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농구 저변 확대에 기여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KBA 3x3 KOREA TOUR 2023시즌 1차~6차 대회 기간
(2023년 4월 ~ 10월)

구분	회차	개최지역	대회일정(안)
지역예선	1차	서울특별시	2023년 4월 15일 ~ 16일
	2차	강원 인제군	2023년 5월 13일 ~ 14일
	3차	경남 양산시	2023년 6월 10일 ~ 11일
	4차	전북 익산시	2023년 7월 15일 ~ 16일
	5차	경남 진주시	2023년 9월 9일 ~ 10일
	6차	미정	2023년 10월 7일 ~ 8일

※ 개최 일시와 장소는 예정(안)이며, 국내 코로나19 상황 또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세부과업내용

1) 인터넷 중계 제작은 협회와 충분히 조율하여 결정할 것

대회명	세부추진내용	비고
KBA 3x3 KOREA TOUR 2023	- 경기수 : 약 120경기 예상(유튜브) - 전 경기 유튜브 생중계 - 일부 경기 네이버 생중계 동시 진행 - 카메라 3대 이상, 아나운서 포함 - 경기장 환경파악 및 장비세팅 완료 - 대회 종료 후 협회에 VOD 제공	1회당 120경기

* 경기 수는 참가팀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2) 인터넷 생중계 송출

-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송출
-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송출
- 포털사이트와의 협의는 업체가 직접 진행하되 진행상황 협회에
통보
- 포털사이트로 송출 시 PC와 MOBILE에 동시송출 진행

3) 인터넷 생중계 인력 및 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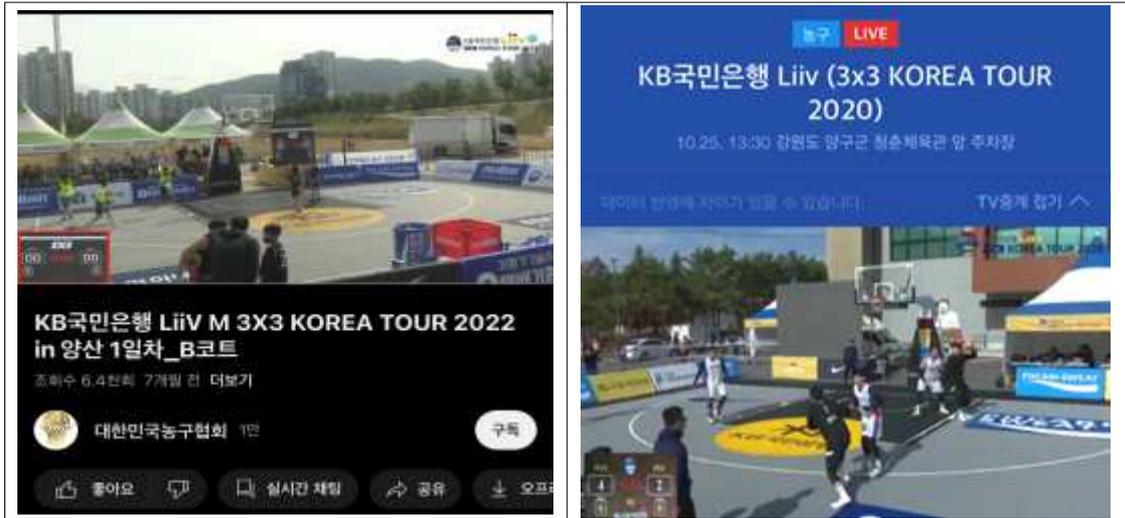
- 일일 중계가 가능하도록 인력 편성
- 투입인력은 스포츠중계방송 제작 경험이 있어야 함
-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인코딩 장비가 구축되어야 하며, 경기장 현장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완장비도 구축
- 본 과업에 대해 협회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사업자가 진다.

4) 인터넷 생중계 구성

- 방송화질은 HD(High Definition)의 16:9로 제작해야함
- 송출되는 방송화질은 고화질이어야 하며 PC는 2M/s 이상, 모바일은 500K이상 운영
- CG 등의 자막은 2D, 3D 형태로 본 대회임을 상징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

5) 기타사항

- 기타 인터넷 중계방송 제작 및 홍보에 관한 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및 협조
-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수행한 결과보고서 제출
- 중계방송 영상물을 협회가 지정하는 곳에 업로드 할 것



4. 사업예산 : 27,000,000원 (부가세 포함)

5. 과업준수사항

- 가. 과업 수행 시,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여건 변동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나.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하여 시행한다.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계약업체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- 라. 계약업체는 행사에 투입되는 진행요원 등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
마. 계약업체는 과업과 관련된 법규에 의거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바. 결과제출

- 결과보고서 1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한 기타 요청 자료 일체
-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: 각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

※ 과업 수행 지침

1. 인력 구성 및 운영

- 가. 과업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며,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, 교체 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.
- 다.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.

2. 과업조건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,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(계약기간)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(계약목적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·이용권은 발주기관에 양도)
- 나. 발주기관에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허,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·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의 30/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
- 마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.
- 바.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- 사.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, 폐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- 아.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.

3. 과업의 변경

- 가.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 - 본 용역의 목적 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 -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

4. 계약의 해지

- 가.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
 -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
 -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

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
5.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

- 가.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,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,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유한다. 다만,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·후를 불문하고 민·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.

6. 과업 보안 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·시행한다.
 -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
 - 과업수행 관련 정보(내용, 결과)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
- 나.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7. 과업수행 성과보고

- 가.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,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 안내 수행 보고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다.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.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

하여야 한다.

8. 최종보고서 납품

- 가.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 순위, 수록 내용,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- 나. 최종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,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.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.
- 나.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